#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(기업용)

| 개정 전 | 개정 후 | 비 고 |
|---|---|---|
| 제 8 조 기한이익 상실의 연대보증인에 대한 통지<br>①~③ <기재 생략><br>④ **<신 설>** | 제 8 조 기한이익 상실의 연대보증인에 대한 통지<br>①~③ <현행과 동일><br>**④ 제 7 조 제 2 항 각 호에 의하여 기한이익이 상실되는 경우, 은행은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날로부터 15 영업일 이내에 연대보증인에게 서면으로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합니다.** | - 연체로 인한 기한이익 상실시 연대보증인 통지 강화 |
| 제 18 조 통지의 효력<br>① <기재 생략><br>② 채무자가 제 16 조 제 2 항에 의한 변경신고를 게을리 함으로 말미암아 제 1 항에 의하여 발송한 서면통지 또는 기타서류가 채무자에게 연착하거나 도달되지 않은 때에는 보통의 우송기간이 경과한 때에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. 다만, 상계통지나 기한전의 채무변제 청구 등 중요한 의사표시인 경우에는 **배달증명부 내용증명**에 의한 경우에 한하여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.<br>③ <기재 생략> | 제 18 조 통지의 효력<br>① <현행과 동일><br>② 채무자가 제 16 조 제 2 항에 의한 변경신고를 게을리 함으로 말미암아 제 1 항에 의하여 발송한 서면통지 또는 기타서류가 채무자에게 연착하거나 도달되지 않은 때에는 보통의 우송기간이 경과한 때에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. 다만, 상계통지나 기한전의 채무변제 청구 등 중요한 의사표시인 경우에는 **내용증명**에 의한 경우에 한하여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.<br>③ <현행과 동일> | - 기한이익 상실 등 중요 의사표시에 대한 통지수단 변경 |